

『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2월 13일

제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용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명 변경
 - 용어 변경 : 폐수종말처리장 → 공공폐수처리시설
 - 제명 변경 : 「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」
- 시설설치비 산출기준,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변경(안 별표 1, 별표 2)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표기 방식 변경
 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(안 별지 제1호서식 ~ 별지 제2호서식)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신설(안 별지 제7호서식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,
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,
「지방세기본법」 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건 호

○ 본 「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제명을 변경하였으며,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